
표현의 자유 연대 -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제 1차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토론회

차례

1부

청소년 정치권, 민주사회의 바로미터 - 김인식(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3
어쓰(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님의 토론문	8
신정현(만18세선거권낮추기공동연대 공동대표)님의 토론문	10
교사가 본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 우돌(경인고 교사)	13

2부

발제

“니들은 정치 몰라도 돼!”에 숨겨진 몇 가지 전제들 - 박권일(88만원 세대 저자)	15
청소년 정치참여 제한 법률의 위헌성 - 오동석 (아주대 교수, 헌법)	20

청소년 정치권, 민주사회의 바로미터

김인식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격동기에는 청년 학생들이 움직인다고 이야기한다. 그러한 이야기가 조금은 공감되기도 한다. 예컨대 올해로 82주년을 맞이하는 학생독립운동이 그 전례로 자리 잡아있고,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08년 촛불집회의 가장 큰 기폭제 역시도 청소년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집회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년들이 앞장서며 당당하게 권력에 맞선 모습을 보며 언론과 군중들은 '촛불 청소년', '촛불소녀' 등 이라 칭하며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이슈화 시켰다. 기성세대가 바라본 촛불 청소년들은 청량감을 주는 의미였을까? 그들은 '청소년도 나서는데' 하며 이른바 넥타이 부대, 예비군 부대들을 만들어 집회에 참여하였다. 나쁜 의중은 아니었겠지만, 은연중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자신들보다 아래의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으리라 싶다.

그렇다면 촛불집회의 기폭제 혹은 청량감을 주는 무엇이었던 청소년들의 삶은 어떠하였을까. 촛불을 든 군중의 외침에 MB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부르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하고, 형식적이거나 국민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대국민사과를 실시하였다. 이후로도 폭력진압은 그치지 않았고, 공안탄압 역시도 계속됐었다. 청소년들 역시도 이러한 탄압에서 예외일 수 없었는데, 온라인에서 MB탄핵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던 안단테(필명)의 조사를 시작으로, 수업 중의 학교로 경찰이 난입해 학생을 조사하고, 학교에선 그 학생을 징계하는 일들도 여럿 있었다. 자유의지로 참여한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안전관리를 명분으로 장학사와 각 학교 교감, 교사들을 파견하여 집회에 있는 학생들을 귀가조치 시키라는 공문을 내려 보내기도 하였다. 촛불집회가 한창일 무렵부터 끝나고 나서도 촛불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의 삶은 피폐했다. 특히나 학생들의 문제가 더욱 심각했었는데,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학생의 신원이 노출되면 학교는 죽어라고 학생을 질책하고 체벌하고 징계하기 바빴다. 몇몇 언론에서 이러한 사례를 보도했고, 몇몇 시민단체에서는 구제의 노력을 보였으나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례들을 고려해보면 촛불집회 참가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는 상당히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초중등교육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앞에서 예로 들었던 학생독립운동, 4.19혁명, 6월 항쟁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본받아야할 정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교과서는 교과서일 뿐 이라고 이야기하는 연유는 바로 현실에서의 실천은 억압받을 사유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역사 속의 사례들은 존경하고 배워야할 부분이라고 교육하면서 막상 현재의 권력에는 굴종하도록 가르치는, 또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교육이념 아래 어떻게 시민교육을 가장한 노예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탄압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2009년 7월 무렵, 서울 송곡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는 1년 전부터 학생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학생회 직무를 수행하던 본인이 출마하였었고, 학교는 이

출마를 제한하였다. 인권위 진정 및 학내시위 등이 있었으나 학교는 출마를 결사적으로 저지하였다. 그렇다면 학교는 왜 출마를 제한했을까?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등 정치적 행동이 학생회장후보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반인권적인 학교생활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참여권을 보장한 '교칙개정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했던 학생회 활동 경력을 이유로 삼았었다. 출마를 봉쇄하기 위하여 학교는 절차적 정당성을 필요로 했는데,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담당 업무를 맡은(공극적으로는 보조가 되어야 하지만) 부장교사의 승인이 필요한 점을 노렸다. 그러한 선거규정의 근거는 후보의 선거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결격사유는 '징계 기록의 유무' 이다. 그렇다면 이 징계는 어떤 징계의 유무인가? 머리카락이 길다거나, 넥타이 착용을 깜빡 하였다던가, 혹은 지각을 한 번 했다면 징계를 받게 된다. 이렇게 불온하고 미성숙한 규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억울한데, 이런 꼼수들을 피해 징계 기록이 없었음에도 학생회 부회장으로서 추진했던 비민주적 교칙의 개정과 촛불집회 등의 사회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학생회장 선거 입후보 자격 자체가 제한된 것이다.

그렇다면 출마제한의 원인이 된 활동들은 정확히 어떠한 것이었을까? 미운털의 원인 중 첫째로는 학생의 날 기념행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일제강점 하의 당시 학생들이 주장하였던 검열의 폐지, 학교운영과정의 학생참여권 보장 등을 대자보, 교내방송 등을 통하여 다시금 주장하였던 것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008년 11월 학생의 날 당시에, 그러한 대자보를 검사받지 않고 게시한 것은 '학교에 대한 반란'이라는 표현을 들었던 것이 아직 생생하다. 이는 우리 교육 현장에서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검열 핍박이 이루어진다는 첫 째 증거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도 학생회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의원회의에서 수차례 학생인권과 관련된 안건들을 상정했고, 결국 그를 의결해서 교사들을 비롯해 운영위원회에 전달하곤 했다. 또, 이러한 활동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묻히는 것을 원치 않았고, 학생회실과 학생매점에 안건에 대한 설명과 결과를 게시하곤 하였다. 학생회 활동의 일부였던 이마저도 승인받지 않았다고 해서 떼이는 것이 결과였지만 말이다. 결정적으로는 촛불집회 및 노동절 집회에 참가했고,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을 이유로 한 것 인데, 학교가 주장하는 말인즉슨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타 학생을 선동할 우려가 있고, 이미 사회세력에 선동되었기 때문에 학생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학교로써는 출마제한을 위한 사유를 하나라도 늘리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도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정치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되어있다는 망상을 갖지 않고서야 행하기 힘든 행보였음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학교가 출마제한을 실시하자, 부당한 행보에 대한 문제제기로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학교를 비꼬는 의미에서 운동장에서 야간촛불집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학생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취한 결정은 시위에 참가한 학생의 얼굴 촬영해가며 징계하겠다고 협박을 일삼는 것이 전부였다. 이 날은 우리 교육의 현실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다음 날부터 교내에서 피켓시위가 열렸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저 놈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 '니들 대학 못 가게 하려고 걱정했다' 등의 교사들의 냉소 정도였다. 교육청은 처음부터 방관했다. 학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자발적으로 해결하라는 것 이었다. 많은 시민들이 학교에 항의전화를 하였으나 학생 스스로가 출마를 포기하였다는 거짓을 이야기하며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이 전부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조치도 가볍게 무시하고 출마제한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거짓들을 만들어내고 학부모회를 동원하여 시위 참가학생들을 선도위원회에 회부케 하였다. 결국 선거 이튿날 까지 출마는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타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하여 '민주적 총학생회, 학우들의 총학생회' 라는 이름의 학생대변(똥이 아니라)기구를 탄생시켰다. 단일화라는 차선을 선택한 것은 출마제한을 인정했던 행동이 아니라 출마를 포기하면 시위에 참여했던 학우들에게 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했던 결정이라 아직까지 합리화하곤 한다.

학생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학생이나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를 비롯하여 인간으로서의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를 명시하고 보장하고 있는 법들은 국제협약을 시작으로 헌법, 일반법에서도 많이 존재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아동권리협약의 경우 12조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게끔 규정하였고, 최근 학생인권조례로 주목받고 있는 '집회의 자유' 역시도 보장하고 있다. 국내법으로도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은 많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 모든 법의 근간인 헌법은 21조를 통하여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37조 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고 이야기하고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헌법의 하위법인 청소년복지지원법 역시도 제3조를 통하여 청소년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권들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법률이 청소년 및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한 참여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실은 시궁창이다. 혹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아서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느냐고 묻기도 한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법 역시 18조에 학생의 인권보장을 명문화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상식에 문제를 가할 수 없다. 하지만 송곡고 학생회장 출마제한 사건에서 교육청이 견지하였던 개입 불가 입장은 이러한 법률을 무색하게끔 한다. 지금이라도 당시 그러한 입장을 표했던 담당자의 얼굴을 보고 따끔하게 꼬집어주고 싶지만, 교육청의 그러한 방관에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 과 국내법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조약에 반하는 규정들이 한 몫을 했으리라 짐작한다. 대부분의 학교 규정들은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권고안을 보내면 그에 맞춰 수정을 하는 편인데, 2009년에도 관에서 생활규정 수정안을 하달하였지만, 시대착오적인 규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규정만을 손질하여 권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 1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생활규정의 경우 제, 개정 절차에 학생참여권이 존재하지도 않는 경우가 다수이며 별도의 규정을 통하여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집회참여시에는 최고 퇴학까지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회를 정치적 행위로 보았을 때, 집회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상위법들에 위배되는 규정인 것이다.

헌법과 국제협약 등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나 표현의 자유 등을 보호한다는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의 박탈은 단순히 교육기관만의 학생인권감수성 부족 등의 사유로만 보기 어렵다.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는 '학생 및 청소년'에 대한 의식의 문제

는 아닐까? 그저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자신의 의사조차 표현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이 그를 비웃듯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야5당에서는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길이라고 이야기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사유를 살펴보면 학생에게 정치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들 한다. 송곡고에서 촛불집회 참여 등이 왜 학생회장 출마의 제한사유가 되는지 설명해주었을 때와 비슷한 이야기이다. 어느 곳을 가도 학생 및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인식은 깊게 뿌리내려있다. 하지만, 학생이나 청소년을 자신과 동등한 입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교사의 정치적 권리도 온전히 보장될 수 없다고 본다. 독자적인 정치적 견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전무했으면서 미성숙하고 정치적 능력이 결여되어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너무 얕생이 같다. 학생에게도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신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의사표현 및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의 정치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타인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 교원의 정치참여도 온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인권에는 자격요건이 없고, 인간이기에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판 신분제도를 지지하는 이들이 운동사회 내부에도 존재한다. 그 신분제도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나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요즘 세상에 신분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권의 보장범위에 있어서도 '이른바 'SKY' 대학출신은 성골이니 모든 인권을 보장해주고, 서울권대학은 진골로 구분지어 정치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또 기타 지방대출신은 6두품이니 양심의 자유까지 덧붙여 제한한다.' 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통용될 수 없는 비상식이듯이 인권에는 어떠한 자격요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런데 '나이'라는 자격요건을 붙여서 청소년들에게 "너는 어리니까, 미성숙하니까" 라는 말을 내뱉으며 정치적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대부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운동사회 내부에서 청소년 인권에 대한 담론을 많이 접해본 사람들 가운데서도 위와 같이 인권에 자격을 나누는 이들이 존재하는데, 일반 대중들의 의식은 어떨까 걱정이다.

최근 학생인권을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에 이어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고, 서울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는 10만 민의가 서울시의회로 전달된 상태이다. 이는 분명 고무되어야 할 일이 맞다. 하지만, 언론보도에서 '위험한 10대'로 주장할 건수가 하나라도 잡히면 마치 마녀사냥 혹은 인민재판 하는 것처럼 "애들에게 인권이니 정치권이니 가당치도 않은 소리였잖아" 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그간의 선언적인 상위법이나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들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누군가는 확실하고 즉각적인 대안이 뭐냐고 묻는다. 하지만 나도 잘 모르겠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쓰레기인데 나라고 별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의 학생운동만 칭찬하던 교과서를 뜯어 고쳐야한다. 자신의 생각을 견고히 할 수 있는 '사고력 키움'이 되어야하고, 그 생각을 표현하는 행위들도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주어야 한다. 지금같이 1987년 뭐가 있었고 그 때 학생들이 훌륭했다, 민주사회 만드는데 한몫했다 정도의 교육은 집어치워야 한다. 나이로 차별하는 것을

철폐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모 청소년 인권단체에서는 나이주의 깨기 운동이 있고, 점차 상호간 존중문화가 뿌리 내려가고 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변하고, 대중이 함께 변화해야 하는 것이다. 변화를 향한 청소년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시작으로, 또 당장 가정의 자녀 혹은 주변의 청소년 활동가를 동등한 입장으로 바라보는 것을 시작으로 그들을 동등한 권리주체로 인정해야한다. 청소년·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억압적 규정들을 철폐하고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한다면 야당, 정치학자, 헌법학자, 교원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것을 넘어 탐스런 열매까지 맺을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서울에서는 서울 시민 1%인 81,885명의 주민발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한 서명운동을 해 왔다. 당연히 나름 청소년 인권활동을 하고 있는 나와 다른 청소년활동가들도 서명을 받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녔다. 그에 관한 설을 풀자면 밤을 새도 모자랄 만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 딱 한 가지만 얘기해 보려고 한다.

주민발의법상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주민발의 서명을 할 수 없다. 그 말은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미친 듯이 서명을 받았던 나도, 내 주변의 많은 친구들도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작 본인들은 서명을 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뭐, 처음 시작할 때 몰랐던 일도 아니었지만 막상 그 상황에 맞닥트리니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한 명 한 명의 서명이 너무나 소중했던 그 때 한 장이라도 서명수를 올릴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부터 한두 마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오묘한 억울함과 불쾌함까지.

‘정치적 권리’가 단순히 선거권 - 혹은 피선거권 - 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다. 투표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권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사실에는 굉장히 많은 함의가 담겨 있다. 그 사실이, 지금 이 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에.

투표란, 그리고 정치란 결국에는 입을 여는 행위이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부터 피켓 하나 달랑 들고 거리로 나가는 것 까지. 그렇기에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청소년들의 입이 틀어 막혀 있다는 뜻이다. 내가 서명을 못 했을 때 느꼈던 불쾌함은 입을 틀어 막혔다는 불쾌감, 넌 닥치고 있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불쾌감이었던 것 같다.

해묵은 ‘미성숙’ 담론은 여기에도 작용한다. ‘아직 판단능력이 없는’, ‘미숙한’, ‘선동당하기 쉬운’ 청소년들은 일단 지금은 공부나 하라는 그 케케묵은 말들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너무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선거기간이 되면 선관위에서 항상 내거는 캐치프레이즈는 ‘투표로 말하세요’ 였다. 그러나 투표로는 말할 수 없는 청소년들은 뭔가 한 마디 말이라도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입을 열려고 하는 청소년들에게, 말을 꺼내보려 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대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외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와 사회는 ‘나중에 어른 되고 나서 말해’ 라는 말 밖에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입을 열려고 노력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2008 촛불집회 때 가장 먼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것은 청소년들이었고, 그 당시 인터넷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을 처음 제안해 수많은 서명을 이끈 것도 17살 학생이었다고 한다. 직접 활동을 하는 청소년 활동가들도, 잘 보이진 않아도 계속 있어왔다. “집에 가서 공부나 해!”라는 말을 들어도 꾀꾀하게 입을 열고 말을 꺼내는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렇게 입을 여는 청소년들에게조차, 그 내용에 따라 가해지는 잣대는 너무나도 다르다. 환경단체나 국제인권단체 등의 청소년 동아리나 관련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가해지지 않는 비난과 공격 - 걱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은 나나 내 주변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가해지곤 한다. 학교 앞에서 '지각을 하지 맙시다' 라는 피켓을 든 청소년을 대하는 학교의 태도와 '학생인권 보장하라' 는 피켓을 든 학생을 대하는 태도는 아마 천지차이일 것이다.

결국 문제는 '정치적인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정치적 발언, 혹은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는가' 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지각을 하지 맙시다' 와 '학생인권 보장하라' 사이의 간극, 그 발언이 어디를 향하고 누구를 위협하는가의 차이일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는, 학교와 이 사회가 청소년들을 어떻게 길러내고 싶은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 같다.

이미 선거권 연령에서부터 입을 틀어 막혀있고, 애써 입을 열려고 하면 사회와 학교의 구미에 맞는 말만 하라고 요구받는 청소년에게 정치적 권리란? 글썽, 아마 멀고도 먼 애기지 않을까.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순결할 것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미 정치적이지 않은가?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들, 내가 사 먹는 커피와 내가 사는 옷 브랜드조차 이미 '정치'와 무관할 수는 없다. 그렇게, 정치적 순결이 불가능한 사회에서 끊임없이 청소년의 입을 틀어막는 건 부당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 (이 점은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성적 제재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렇다고 사회가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으니, 결국 필요한 건 틀어 막힌 입을 뚫고 끊임없이 말을 꺼내는 청소년들이 아닐까. 입 닦이라는 사회에 대고 당당하게 외치는 청소년들이 조금 더 많아질 때, 그리고 이 사회에서 그런 청소년들에게 그 입 다물라는 말 말고 다른 말을 건네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조금쯤 바뀔 수 있지 않을까.

● 청소년 정치참여 네트워크(이상 청정넷) 소개

이제껏 청소년들에게 정치라는 것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어른들로부터 정치는 부패했고, 정치인들은 썩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선입견만 가지고 자랐다면, 그런 청소년들이 자라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됐을 때 정치의 안 좋은 면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교육적인 부분들이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발족한 단체입니다.

● 만18세선거권의 당위성

우선 사회적으로 국가의 4대 의무를 지고 있는 연령대가 18세부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총을 들 수 있는 나이가 18세부터이고, 현재 18세 중에는 납세의 의무를 지는 사회인들도 많습니다. 또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충분히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18세이기도 하구요.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민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나이가 18세부터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만 없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구요. 실제로 18세라고 한다면, 내년 대선기준으로 봤을 때 대학생 혹은 사회인이 89%이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12년 이상의 민주 시민 교육을 받았다면 충분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적인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2년 동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만 박탈돼 있다는 것이죠.

● 만18세가 정치에 참여하기엔 아직 어리다는 사회의 통념

그것이 제일 큰 벽이더라구요. 아직은 미성숙하다고. 그러나 최근 사회 현상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미 청소년들은 사회 여론의 주체입니다. 이미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여론, 100만 개의 카페와 토론게시판에는 청소년들이 주인이 돼서 활동하고 있구요. 이들로부터 이뤄지는 여론이 사회 여론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효순이 미선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소년 몇 명이 모인 촛불 시위가 국가적인 여론을 이끌어 갈 만큼의 힘이 되었고, 2002년 월드컵 때도 청소년들이 나가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 사회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데 단순히 어리다는 편견, 선입견과 맞설 때는 참 힘이 들더라구요.

● 청소년이 현실정치에 오염될 수 있다는 염려

정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저희는 오히려 그것이 긍정적 효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의 삶을 버려가면서까지 정치에 참여하지는 않아요. 관심은 분명히 갖지만 자기의 일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고등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준다면, 분명히 청소년들도 내가 살고 있는 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정치 참여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을 아주 강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 시민 교육을 강화시키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지, 정치 유세의 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 현대 20대 투표율이 가장 저조하며 18세 선거권이 생기면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

그 부분을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을 정치라는 것과 단절돼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대학에 왔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기겠습니까?

만약 18세 고등학생들에게 선거권이 생긴다면, 분명히 이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 교육의 변화 역시 일어날 것입니다. 정치와 사회 과목이 수능을 위한 과목이 아닌 나의 현실에 접목된 과목으로 바뀔 것이고 정치권은 청소년의 이슈에 민감해지겠죠. 또한 외부의 영향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신속히 여론을 형성하며 강력하게 결집하는 것은 청소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투표율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18세선거권 부여 현황

OECD 가입국 30개국이 우리를 빼고는 거의 18세 정도에 선거권을 주고 있죠. 북한도 17세에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 18세 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방안

현재 저희가 가장 힘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국회의원 설득 작업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왜 18세가 타당한가를 청소년들의 마음을 담아서 설득하고 있구요.

여기에 동의하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이미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의원들이 벌써 100여명이 훌쩍 넘어가고 있구요. 과반수가 훨씬 넘어갈 때까지 서명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약4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18세 공동 연대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18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지속적인 세미나와 토론회 또는 축제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할 생각입니다.

● 정치권을 대상이 아닌 청소년 내부의 변화를 꾀하는 활동 방안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운동이 학생회 네트워크 운동입니다. 각 고등학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학생회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많이 열고 싶어요. 그리고 꼭 하고 싶은 것이, 각 지역별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토론회를 열고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청소년들이 먼저 왜 내가 18세에 선거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 발언

우선은 저 역시 18세를 지나왔고, 당시 정말 사회에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문힐 수 밖에 없었던 것들이 있었죠. 제 주변에 실제로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사회 생활을 하면서 납세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일찍 군대를 간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사회에 바라는 너무나 많은 욕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20세라는 논리 없는 제도 속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왔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면 이 사회가 올바르게 변화할 수 있도록 힘쓰는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른들! 조금만 청소년들에게 힘을 보태주시고, 청소년들! 우리가 정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 힘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 2004년 10월 2일 CBS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신정현 공동연대 대표 인터뷰 발췌

교사가 본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우돌 (경인고 교사)

#1. 학생들에게 쌍욕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권리가 필요하다.

학교에 학생인권의 바람이 아이들이 대든다는 표현을 한다. 이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외치고 싶다. “다 학생들에게 정치적 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민주주의는 피흘리는 혁명을 없애기 위해 생겨났다. 즉 일방적으로 권력이 있는 자가 누를 수 있을 때는 그냥 누르다가 들고 일어나니까 둘이 싸우다 지쳐서 이제 그만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해보자’고 하여 정치적 권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어찌말하면 정치적 권리는 서로 이익이 대립하는 관계 속에서 타협하는 방법을 배우는 권리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들이 교사에게 욕을 하기 전에 정치적 권리에 대해 교육받기 시작했다면 우아한 말투로 정치적 압력을 받을망정 쌍욕을 듣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야말로 판짓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아수나로 활동가들은 학교를 안가도 너무 바쁘다. 활발한 정치 활동(토론회, 서명받기, 시위 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정치를 한다면 어른들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췌인 정치적이면서도 반정치적인 행동(수업시간에 태업하기, 약한 사람 괴롭히기 등)을 하지 않을 것이다.

#.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를 위해서라도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가 필요하다.

지금 민노당을 후원한 사건으로 천 여명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재판에 걸려있다. 본인도 5년에 걸쳐 10000원씩 44만원 후원하고 50만원 벌금 먹었다. 어이없는 일이다. 나는 솔직히 학생들에게 무상급식과 선별급식에 대해서도 다 드러내놓고 토론하고 싶다. 그런데 내가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것이 민노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이래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사회주의자여서 무상급식을 당연히 지지하는데 그래서 00당을 지지해. 너희는 어떤 당을 지지하니?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00아, 너는 돈내고 급식 먹는게 왜 더 좋은데? 뭐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학생들이 정당을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산이라는 것이다. 빨리 학생들로부터 저는 한나라당, 나는 국민참여당, 난 민주노동당, 난 00당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럴 때 학생들과 교육에 대해서도 더 많은 토론이 일어날 것이다.

혁명적인 교육개혁을 위해서도 정치적 권리가 필요하다.

사실 모든 혁명은 이권이 개입되지 않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이권이 개입되어있다. 교장,교감, 교육청 말할 것도 없고, 전교조도 자유롭지 않다. 무엇보다도 남한사회에 몇 안남은 정규직 직장을 차고 있기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 밥그릇을 지켜야 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힘이기도 하지만, 발목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이권이 개입되어있지 않은 학생들의 정치적 권리 즉 집회,시위의 권리가 있어야 교육문제의 혁명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학교가 가치중립적인 공간으로 가장되어있어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은 학생이다.

가치중립적인척 하면서 보수이데올로기를 설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적 권리가 필요하다.

학교는 가치중립적인척 하면서 주류의 가치를 가장 많이 선전하고 있다. 사회, 정치, 경제, 국어 교과서들은 대부분 대화, 타협, 공손, 예의, 배려, 질서 등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암기식으로 설파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한다는 것이지만, 불행인 것은 시험으로 암기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력을 미쳐 이런 이데올로기가 자신의 사고를 가두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래서, 요즘엔 논리적 글쓰기보다는 소설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 이데올로기를 강요할 명분이 없어지므로

암튼 이런 면에서 학교는 전혀 탈정치적이지 않다. 누군가는 더 노골적으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설파할 것이므로 안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노골적이기 어렵고 중립의 탈을 쓴 지금보다는 노골적인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그 폐해가 덜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탈정치적인 척 하지 못하도록 공개적으로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는 편이 낫다.

“니들은 정치 몰라도 돼!”에 숨겨진 몇 가지 전제들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의

박권일 (저술가 · 『88만원 세대』 저자)

이른바 형식적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한 치도 진보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의 감수성일 것이다. ‘고운(고등학교운동)세대’가 학벌 시스템을 재생산하는 대학입시를 거부하고 학교에서 잘린 전교조 선생님들과 눈물을 흘리며 연좌농성을 하던 때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다. 그런데 아직도 청소년들은 두발규제와 교사의 구타에 시달리고 있다, 아직도! 아직도 학벌 시스템에 항의하며 명문대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입시 스트레스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를 요청받았을 때 처음 느낀 감정은 그러므로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다. 아직도 한국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에 대해 선배세대로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다. 자그마치 20여 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과연 선배세대는 지금 청소년인 후배들에게 촬영기능 달린 휴대전화 이상의 자기방어수단을 제공하였는가? 참기 어려운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해 한 마디 거들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영광스러운 일이다. 결국 우리는 원칙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한발 한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 청소년=1백 년 전의 미국 청소년”

지난 해 10월 12일, 『Detroit Free Press』 온라인 판에 흥미로운 글이 실렸다.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의 작가 미치 앨봄이 쓴 칼럼이었다. 「Korea's kids just like ours, 100 years ago」라는 제목의 그 글은 “한국교육을 따라 배워야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이었다. 2010년 당시에 한국에 살며 직접 한국의 현실을 곁에서 지켜본 미치 앨봄은 “한국 아이들은 백 년 전 미국 아이들 같다”는 제목처럼 한국의 청소년들이 겪는 입시교육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조목조목 짚어준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오바마는 극성스런 부모, 치열한 대입경쟁, 압도적 학습량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한국식 교육’의 적극적인 지지자다. 실제로 현재 미국교육의 위기가 낮은 교육열과 적은 학습량에 있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었기 때문에 오바마의 한국교육 찬양은 그만큼 화제를 불렀고, 미국 내에서도 동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오바마의 이야기와 유사한 주장들이 출판되거나 매체를 점령하면서 하나의 담론을 형성했다. 예를 들어 에이미 추아가 쓴 『타이거 마더』는 글자 그대로 호랑이 같은 엄마가 자녀들을 스파르타식으로 조련해 명문대에 보내는 이야기다. 원래 미국에도 ‘하키맘’이니 ‘풋볼맘’과 같은 극성스런 치맛바람을 가리키는 단어들도 있긴 하다. 그러나 명문대에 보내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국, 중국 등 동북아시아 이민자 부모의 노력과 근성에 비한다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 수준이다. 요컨대 광적인 교육열로 유명한 동아시아적 학력재생산 양식이 미국 주류사회에서 일종의 ‘대안적 교육 철학’으로 떠오른 것이다.

미치 앨봄의 칼럼은 이런 흐름에 대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단호하게 ‘노’를 외치고 있다. 그가 직접 목격한 한국 청소년들의 생활은 끔찍한 것이었다.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끝없는 경쟁에 노출되어 십 수 년 간 입시교육의 노예가 되거나 사회적 낙오자가 되는 한국사회의 모습이 그에게 정상으로 보였을 리 없다. 그는 낮이고 밤이고, 주말이고 주중이고 학교에 갇혀 지내는 걸 당연시하는 한국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미국교육 시스템의 모델이 될 수 있느냐고 되묻고 있다. 그리고 “내 아이가 글로벌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묻고 제 자식들을 영어를 쓰는 미국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한국인들의 이상한 정서를 꼬집는다. 앨봄이 보기에 이것은 20세기 초 미국 이민자 가정이 아이에게 낙오자(a loser)가 되고 싶지 않으면 대학에 가라고 닦달했던 풍경을 연상시킨다. 결론적으로 그는 한국식 교육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한국교육을 배우는 것은 곧, “잘 웃고, 열심히 스포츠를 즐기고, 좀 더 자신을 스스로없이 표현할 줄 아는” 청소년 대신에 늘 비교당하고 피말리는 경쟁을 해야 하는 청소년을 양산하는 사회 시스템으로 퇴행하는 것이다.

미치 앨봄은 한국의 입시교육에 초점을 두어 이야기하였지만, 이걸 단지 페다고지의 문제는 아니다. 결국 문제는 어떤 사회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실은 이것이야말로 핵심적 문제이다. 청소년을 미숙한 존재,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전근대적 사회에서 한국사회는 과연 얼마나 앞으로 나아간 것일까? 청소년의 정치참여라는 주제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의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여전히 한국의 청소년들은 정치참여에서 제도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 먹고 어른 되면 가지는 금세 가지게 되는 권리인데 뭐가 문제냐’며 무신경하게 문제 자체를 외면하면서, 거의 반세기 동안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수성은 한 뼘도 자라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이유에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선입견, 사회에서 유통되는 담론에서 항상-이미 전제된 숨은 편견들이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자.

숨은 편견 1: “청소년은 판단능력이 부족하다”

선거연령을 높여 잡아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근거로 흔히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바로 ‘미숙’ ‘판단능력 부족’이다. 청소년들은 아직 정치적 선택을 합리적으로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의외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이유에 납득을 해버리고 만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이것이 굉장히 이상한 논리라는 걸 금세 깨달을 수 있다.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판단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한다. 그럼 판단력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 즉 정상적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자국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규 공교육을 이수한 사람인가? 그것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판단력이란 게, 성인들 사이에서도 천차만별이니 말이다. 어떤 사회의 ‘표준적 판단능력’을 누군가가 결정해 놓았다면 모를까, 정상적 판단력이라는 범주 자체를 명확히 정의할 방법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법 논리로 정해놓았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미성년자가 이른바 민법상 3대 무능력자이고, 선거권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러나 법적 기준이 명백히 실현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윤리적 정당성과 논리적 정당성이라는 층위에서 말해보자면, 공동체 구성원에게 사회적 권리와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 어떤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눈을 감고 낭떠러지를 걷는 것보다 더 위험한 태도이다.

‘탐욕스럽고 불결하며 공동체의 미덕을 파괴하는 유대인’에 대한 집단적 배제와 홀로코스트를 가능케 한 인종주의적 감수성과 그야말로 백지 한 장 차이이기 때문이다.

‘느슨한 경험칙’으로 재단했을 때, 일반적 청소년은 일반적 성인에 비해 여러 사회적 제도나 정책, 사건들을 판단할 때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고려를 하지 못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능력이란 것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정도의 판단력 부족상태인 가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 쉽지 않다. 만약 법적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한 명과 평범한 청소년 한명에게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급박한 기로의 선택을 맡겨야 한다면 나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청소년에게 나와 사회의 운명을 걸겠다. 농반진반으로 하는 이야기이지만, ‘판단력을 충분히 갖춘’ 대한민국 성인들이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이 이명박이라면, 그 판단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

숨은 편견 2: “책임(의무)이 없으니 권리도 없다”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자주 드는 것 중 또 하나는 “책임이 없으니 권리도 없다”는 논리다. 이는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보호대상으로 보는 관점의 거울상이라 할 수 있다. 때때로 청소년들이 최소한의 인권과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면 어김없이 냉소적 반응이 튀어나온다. “니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죄 지어도 청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잖아. 그만큼 사회가 보호해주니까 권리도 적은 게 당연한 거야.” 이런 논리는 일종의 호혜적 원칙처럼 들리기 때문에 겉보기에 꽤 공정해 보인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다.

사회적 권리와 의무는 지금 보면 마치 일대응 대응관계 혹은 호혜성의 관철처럼 보이겠지만 권리와 의무가 형성된 역사를 들여다보면 권리와 의무와 호혜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지극히 드물다. 권리와 의무는 항상 비대칭적으로 발생하거나 소멸했으며 양자의 관계는 사후적으로 정당화되곤 했지 선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이런 의무를 지니니까 당연히 저런 권리가 생긴다’는 식으로 사회적 제도가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청소년에게 사회적 책임이 상당 부분 면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청소년이 결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가 일방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 청소년이 보호를 요청하고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의미다. 요컨대 이것은 어떤 종류의 사회적 계약이 아니다. “책임이 없으니 권리도 없다”는 말이 최소한의 정당성을 가지려면 먼저 청소년에게 책임과 권리의 평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책임이 없으니 권리도 없다”는 말은 사회적 계약이 아닌 것을 마치 사회적 계약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정성을 내세우며 공정성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어떤 기원 내지 원초적 상황을 은폐하고 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권리와 의무가 반드시 어떤 필연성을 가지고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논리적·윤리적 필연 때문이 아니라 대개 현실적 필요 때문이었다. 청소년에게 책임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권리도 없다는 말은 “때문에”라는 말 덕분에 마치 논리필연적인 주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다. 의무가 생긴 뒤 권리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권리를 확보한 뒤 의무가 부과될 수도 있다. 청소년에게 권리가 먼저 주어지고 나중에 의무가 부과된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히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청소년은 (예컨대 17세 참정권처럼) 의무보다 조금 먼저 주어진 권리를 먼저 누리면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숨은 편견 3: “정치적 권리는 절박한 사안이 아니다”

정치적 권리를 많은 사람들은 일종의 2차적 권리라고 생각한다. 생존권 또는 먹고사는 문제보다 훨씬 덜 중요한 권리로 이해한다는 뜻이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같은 것들은 ‘배부르고 등 따신’ 연후에나 고려할만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여전히 박정희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유이며, 아직도 일각에서 그가 주창한 소위 ‘한국형 민주주의’를 무슨 대단한 업적인양 숭앙할 수 있는 근거다.

정치의 역사를 크게 ‘두 번의 분리’로 일별해 본다면, 첫 번째 분리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일 것이다. 그럼 두 번째는? 자본주의의 출현 이후 ‘정치와 경제의 분리’다. 시장원리가 사회의 금과옥조가 되면 될수록 정경분리 이데올로기는 더욱더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기업과 시장의 일에 국가와 정치는 끼어들어선 안 된다는 주장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에 가장 득세한 이데올로기였다. 오늘날 박정희 신화는 두 번째 분리와 관련되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정작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거의 완벽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였다는 점이었다.

어쨌든 정치적 권리를 소유권 같은 경제적 권리보다 하찮게 생각하는 인식은 바로 ‘정치와 경제의 분리’라는 현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런데 정말로 정치적 권리는 경제적 권리보다 하위의 권리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정치적 권리를 배부른 소리라 치부하는 것은 현실을 오도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정치적 권리의 장에서 시민들은 한 사람 당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n분의 1의 주체’이다.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완전히 평등하다는 걸 전제한다. 그러나 경제적 권리의 장에서 시민들은 ‘1원당 1표’ 썩이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의 권리를, 돈이 없으면 그만큼 권리가 줄어든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주장하는 세력은 경제적 권리의 장에서 이미 강자의 지위를 획득한 자들이다. 그들은 부자든 빈자든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통해 그들이 궁극적으로 획득하려는 것은 현재의 권력을 영속화하는 것이다. 그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결코 아니다. 정치를 경제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권리를 절박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그들은 부와 권력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부자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멍청이다. 사회적 절대적 빈곤이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 그러나 부의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는 지금, 정치는 만연한 불공정과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절박한 투쟁의 장이 되었다. 사회진입을 앞둔 청소년들에게는 두 말할 나위 없이, 그야말로 목숨만큼 소중한 권리다.

숨은 편견 4: “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내 자식에겐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고 싶다’는 부모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제 자식들을 박물관, 미술관, 전시회, 클래식 공연에 하루가 멀다 하고 데려간다. 하지만 신문의 뉴스를 보라고 하지는 않는다. 특히 정치면은 눈길도 주지 말라고 한다. “정치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부모의 자식들은 자라서 미시마 유키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 누구보다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했던, 도쿄대 법대 출신의 파시스트 소설가 말이다.

청소년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이 당장 하는 소리가 “발랑 까졌다”“되바라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니깻 게 정치에 대해 뭘 안다고 나서냐’고 역정을 낸다.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회에서 학교의 잘못에 작은 문제제기만 해도 ‘어린놈이 정치꾼 되려고 그러느냐’는 소릴 듣는다. 경제적 욕망을 드러내면 ‘경제관념 있다’고 칭찬을 받지만, 정치적 욕망을 드러내면 욕을 먹는다. 이런 경험을 몇 번 겪으면 어지간히 ‘나대는’ 청소년도 쉽사리 정치 애길 꺼내지 못한다. 그리고 은연중 ‘정치는 더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몸에 배어든다.

물론 정치는 때로 더러운 일이 된다. 때로 모양새가 좋지 않은 일도 벌어진다. 정치의 세계에는 수학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결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고 개인 잘못은 아니지만 책임을 뒤집어쓰는 일도 생긴다. 왜 유독 정치가 더러운 것이 됐을까. 그것은 이미 더러운 것을 일삼던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정치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기예와 미덕을 어렸을 때 훈련받지 못하고 이미 뇌와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다음, 돈 걱정 없는 노후의 소일삼아 정치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정치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다. 더러운 것 하던 이들이 정치로 몰려드는 시스템이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정치를 더러운 계토로 만들면 누구에게 가장 이익이고 누구에게 가장 손해일까. 답은 명백하다. 모든 피해는 사회적 약자가 보게 된다. “정치는 더러운 것”이란 논리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가치 있는 다른 일에 매진할 것을 권하는 비교적 ‘선량한 어른들’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주장이다. 그러나 본질은 명확하다. 청소년을 정치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탈정치 버전일 뿐이라는 것.

시민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길러진다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선거권 내지 선거연령의 문제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선거연령이란 건 특정 나이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거연령을 더 낮추려는 쪽과 덜 낮추려는 쪽의 지루한 공방이 될 운명이다. 물론 그런 제도적 진전이 가지는 실제 효과와 상징성은 너무나 크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단지 한 두 살 어린 유권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생활에서 접하는 정치적 활동들, 예컨대 정당 활동이나 학생자치 등의 차원이다. 이런 활동들을 활발히 하며 청소년들이 정치적 감수성을 체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민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선거권 확대의 진정한 내용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중고등학생들이 보는 사회경제 교과서에는 노동조합이 어떻게 구성되며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가 마치 노동운동 조직의 파업 매뉴얼처럼 설명되어 있다.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청소년들은 우파정부가 시행하려던 비정규직 약법에 맞서 거리로 나왔고 끝내 막아낼 수 있었다. 한 사회의 진보는 진보적인 대통령 한명 뽑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진보라는 것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인지를, 얼마나 쉽게 후퇴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현 정권을 포함한 세 번의 정권을 거치며 충분히 경험했다. 사회진보의 가장 튼튼한 기반은 불평등과 부조리에 예민한 시민들의 비판정신과 연대의식이다. 다음 세대를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는 정치, 청소년들의 생활에 뿌리내리는 정치적 권리의식이야말로 그런 진보적 시민의 출현을 비로소 가능케 한다. 시민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까닭이다.

청소년 정치참여 제한 법률의 위헌성

오동석 (아주대 교수, 헌법)

가. 머리말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으로 학생인 청소년의 인권 보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정치참여의 영역에서 청소년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¹⁾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싼 논의에서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하여 맹공을 퍼부을 정도로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우려하는 보수적인 언론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외국의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다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2005년 12월에 세계 최연소 국회의원이던 독일 녹색당의 안나 뤼어만(Anna Lührmann, 당시 22세)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청소년의 정치참여 또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우려하는 시각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신문은 그 이전부터 그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²⁾ 그녀는 방문일정 중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한국과 독일의 청소년 사회·정치참여 지원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선거권 연령의 구분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선거

1)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정치적 참여의 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정도이다. 이용교/ 천정웅/ 김경준, 청소년 인권과 참여, 양서원, 2009, 78. 연구자들의 아동권리협약상 참여권 관련 조항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김윤나, “청소년 참여권 연령에 대한 부모-교사-청소년간 인식 차이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10권 제3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0, 360.

2) 뤼어만은 10살 무렵부터 그린피스 환경보호 지킴이와 학교 학생회 활동을 했으며, 자연스레 녹색당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녹색당 산하 녹색청소년에서 활동했고, 김나지움에 다닐 때는 고향인 헤센주 녹색당 청소년 대변인을 했다. 그리고 19살 나이에 녹색당 비례대표로 독일 연방의회 의원이 됐고, 2005년 9월 총선에서 재선 의원이 되었다. 그녀는 청소년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유럽연합위원회 경제발전·협력위원회, 독일연방의회 예산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동아일보 2002.09.2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0152934>; 문화일보 2005.12.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0130464>; 한겨레 2005.12.04., <http://www.hani.co.kr/kisa/section-004004000/2005/12/00_4004000200512041950822.html>; 한국경제 2005.12.0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855144>; 한국일보 2005.12.14.,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512/h2005120418364221950.htm>, 검색일: 2011.10.20. 한편 한국의 청소년 정치참여 상황에 비판으로는 성윤오(고교 2년), “한국 10대만 유독 미성숙한가,” 한겨레21 2003.12.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1&oid=036&aid=0000003921>; 한겨레 2007.12.14.,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56953.html>; 천정배, “113 개국 이미 18세 투표.. 한국의 안나 뤼어만, 언제 나오나,” 오마이뉴스 2004.02.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42244>, 검색일: 2011. 10.20.

권연령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선거권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가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이러한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³⁾ 그러나 현재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20세 미만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논의하는 경우 선거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다양한 정치참여의 방법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치참여는 정당 가입, 선거권 및 피선거권 행사를 통한 선거 참여, 주민투표 또는 국민투표와 같은 투표 참여 등 구체적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일단 현재의 선거권연령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의 정치참여 제한에 대한 위헌성 판단기준을 검토하였다.

나. 선거권연령 결정의 헌법원칙

헌법이 존재하는 까닭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민의 민주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권력을 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헌법의 모든 규정은 국가의 입법권·집행권·사법권 담당자에 대하여 국가편의주의적 습성을 버리고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최소한 제한하며 민주주의에 최대한 충실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제한에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적합성과 피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이 요청된다. 따라서 그 제한에는 이러한 기준에 따른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1948년 헌법 제정 이래 한국의 국가권력은 그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기본권 보호규범이자 민주적 통제규범으로서의 대한민국헌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선거권연령에 대한 제한을 헌법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도 입법자인 의회도 헌법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도 헌법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고 설득력 있게 그 제한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선출된 국가기관과 그의 결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선거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에 달하기만 하면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납세액이나 소유하는 재산, 사회적 신분·인종·성별·종교·교육 등 어떠한 사유도 선거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현재는 연령에 의하여 선거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정 참여수단으로서의 선거권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인 판단능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선거권연령에 이르지 못한 국민들의 선거권이 제한되고 그들과 선거권연령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 차별취급이 발생하므로, 이에 관한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이념과 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을 인정하는 보통선거제도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터 잡아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자의적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재판관의 의견(아래 “4인 의견”으로 줄임)에 나타나듯 “보통선거원칙은 평등선거원칙과 함께 선거에 있어서의 평등원칙이 구체화된 표현이나, 우리 헌

3) 현재 1997.6.26. 96헌마89.

4) 이 판결은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현재 2001.06.28. 2000헌마111; 2002.04.25. 2001헌마851 · 2002헌마102; 2003.11.27. 2002헌마787.

법 제11조의 일반적인 평등원칙이 단지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인 평등이라면, 보통선거 및 평등선거의 원칙은 모든 국민에게 가능한한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를 요구하므로, 형식적이고 엄격한 평등이라는 뜻에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과 차이가 있다.” 즉 “보통선거원칙에 대한 예외는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제한한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이어야” 하며, “보통선거원칙의 예외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 따라서 입법자는 “국민이 독자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만한 정신적 수준에 도달했다면 입법자는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물론 현재의 다수의견이 판시하였듯 선거권연령은 “입법자가 그 나라의 역사, 전통과 문화, 국민의 의식수준, 교육적 요소,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자율성, 정치적 사회적 영향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합적 결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논거에 따라 이루어지는지의 문제이다.

현재는 선거권연령은 선거권행사에 요구되는 정치적 판단능력의 수준을 설정하고 일정 연령집단의 정치적 판단능력의 보편적 수준을 파악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데, 대의민주제에서 선거권행사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치적 판단능력의 수준과, 또 일정 연령집단의 정치적 판단능력의 보편적 수준을 측정할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없고, 이러한 사항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입법자보다 고도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런데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늘 그러했듯이 이에 대하여 일언반구 설명도 없으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도 종합적 판단을 한 결과만 있지 종합하면서 판단하는 과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로지 권력에 의한 최종 결정만이 존재하였다.

다시 현재의 판단으로 돌아가면, 현재는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①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②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③ 선거권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⁶⁾ 이 문제를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과 배제라는 양립할 수 없는 측면에서 보았다면,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인 것이 아닌 한 재량”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지 판단’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위헌결정으로까지 가는 나아가지 못해도 헌법불합치결정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4인 의견은 선거연령이 “입법자가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 및 전반적인 교육수준,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의 정도, 언론의 자유의 보장 정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추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았다. 입법자는 “되도록 전체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요청하는 민주주의원칙과 선거의 본질과 기능에 내재하는, 유권자의 최소한의 정치적 판단능력에 대한 요구를 서로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4인 의견은 “대한민국 수립 이래 지속적으로 향상해 온 국민의 교육수준, 국가와 사

5) 반면 이영모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헌법 제11조 제1항이 예시하고 있는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취급은 통상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로 추정되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합리적 차별취급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차별취급에 관하여는 대의민주기관의 입법행위는 합헌으로 추정되고, 차별취급 또한 합리성의 추정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결론으로서는 선거권 ‘연령’은 헌법 제11조 제1항 후단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유 중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18~19세 국민들에 대한 선거권연령 제한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취급이라는 점을 논증할 책임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6) 헌재 1997.6.26. 96헌마89.

회의 민주화, 그 사이의 엄청난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경제·문화수준의 향상,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와 언론매체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미 18~19세 연령층의 국민은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최소한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4인 의견은 “오늘날의 변화한 현실과 세계 각국의 추세에 비추어 우리도 선거연령을 현재의 20세에서 보다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다만, 입법자가 정치의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9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선거연령에 관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고, 따라서 아직 이에 관한 충분한 경험과 인식을 축적하지 못한 처지에서 변화한 현실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도 갖지 못하였으므로 선거연령을 20세로 규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직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 입법자는 1960. 6. 15. 제3차 헌법 개정 이래 우리 사회가 겪은 전반적 변화를 고려하여 민주주의원리와 보통선거원칙에 보다 부합되고 또한 장래에 있어서 그에 대한 위반을 배제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⁷⁾ 그나마 4인 의견은 ‘아직은 합헌이지만 입법을 촉구하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추상적인 입법개선사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권연령이 19세로 낮춰진 것은 한참 뒤인 2005년 6월의 일이었다.

다. 선거권연령 결정의 구체적 기준

현재는 입법자가 민법상의 성년인 나이 이상으로 선거권연령을 합의한 것에 대하여 ① 미성년자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의 불충분, ② 교육적 측면에서 예견되는 부작용, ③ 일상생활 여건상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을 고려하였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로 선거권연령을 결정함에 있어 구체적 기준을 민법상 성년 기준에 맞추는 것은 타당한가의 문제가 있다. 현재는 민법상 성년 기준에 따라 선거권연령을 정한 선거법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2011년 3월 7일 개정된 민법은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낮추었다. 한편 2010년 2월 26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등 11인은 18세 이상 청소년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그 이전부터 선거권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은 많았다. 그렇다면 어떠한 헌법적 논거와 기준에 따라 선거권연령을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는 “민법은 행위의 결과를 인식함에 충분한 정신능력을 갖춘 시기를 만20세로 보고 있는데(제4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미성숙성 즉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성년자와 달리 취급했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는 법률에서 흡연과 음주를 하는 행위, 흥행장·유흥업소·사행행위장·유기장 등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도 미성숙을 전제로 한 것이며(미성년자보호법 제2조 제1항),⁸⁾ 인간의 능력은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개인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20세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구분을 한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만, 법률관계의 안정과 객관성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헌법상 수긍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4인 의견은 다르게 접근한다. 민법이 성년의 나이를 정함으로써 부여하는 행위능력은 “자신의 책임 있는 행위로 법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능력”인데 비하여,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7) 현재 1997.6.26. 96헌마89.

8) 미성년자보호법은 1999년 7월 1일 법률 제5817호로 폐지되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제2조 제1호).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선거결과는 다수에 의하여 압도당한 소수를 포함한 전 국민과 국가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선거권행사능력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국가의 장래에 관한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정치적인 행위능력”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상의 행위능력은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보호, 거래의 안전, 계약의 안정성 등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선거연령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국민 참여의 한계를 의미하므로 선거연령과 민법상의 행위능력자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4인 의견이 타당하다.

현재는 두 번째로 “대학진학과 취업을 앞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일부를 정치에 참여케 하는 선거권 부여는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교육법 제96조, 제102조의2, 제107조).” 그런데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 민주국가의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실천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민주시민교육이 될 것이다.

현재는 세 번째로 “18-19세의 미성년자들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므로 이러한 미성년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바람직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존성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보 획득에서 우월한 경우가 많으며, 선거에서 세대간 차이점이 뚜렷이 드러나듯이 정치적 판단에서 독자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비밀선거가 보장되므로 그 의존성이 선거로 직접 이어지기는 어렵다.

네 번째로 연령에 따라 성숙성을 구분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선거권연령을 결정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일 뿐 실질적인 선거권행사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발달과정은 서서히 이루어질 뿐 아니라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숙의 의미 또한 인간의 다양한 영역의 능력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나 역할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령의 기준 자체가 그 분할점의 주관성·임의성 등으로 인해 권리 배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다수 청소년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위험한 기준이다.⁹⁾

다섯 번째로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여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고 능숙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다시 경험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경험 없이 경험을 갖추어야 하는 순환적 오류(tautology)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실수 자체를 부정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같이 실수를 통한 성장의 기회와 경험이 부여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을 ‘실제능력’ 소유자인 ‘현재성인’과 대별되는 ‘잠재능력’ 소유자인 ‘미래성인’으로 바라볼 때 무엇보다도 다양한 권리행사의 경험이 잠재능력의 개발과 미래성인으로서의 성장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권리행사의 경험이 주어지야만 비로소 필요한 능력획득과 성숙이 가능하다.¹⁰⁾

그런 점에서 현재의 논증은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장 헌법합치적인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문제이다. 그 첫 번째 기준은 다른 입법례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선거권연령을 확정짓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은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선거권에 대해서만 불합리하고

9) 최윤진, “청소년 권리 제한 논리의 부당성에 관한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제 29 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9; 최윤진,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선거연령,” 선거연령 하향 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김형주 의원실 주최 토론회), 2004.09.0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 kanwhasun&logNo=1000127635](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anwhasun&logNo=1000127635) 24>, 검색일: 2011.10.20.

10) 최윤진, “청소년 권리 제한 논리의 부당성에 관한 고찰,” 17-18; 최윤진,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선거연령”.

불공정하지 않은지' 판단하는지 기준이 된다. 물론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은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법률을 보면, ① 근로기준법 제65조에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 ② 병역법 제8조 제1항에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는 규정, ③ 민법 제801조(제807조·제808조)에 만18세가 된 사람은 동의를 얻어 약혼(혼인)할 수 있다는 규정, ④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에 18세 이상인 자가 순경에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정, 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에 운전면허의 결격자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한하는 규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규정들이 18세 이상의 국민을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음과 대비하면, 유독 선거권연령에 있어서만 보수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표 1> 세계 각국의 선거권 부여 연령 (총 187개국: 2008년 기준)¹¹⁾

연령	국가명	국가수
16세	니카라과, 브라질(임의적), 소말리아, 오스트리아(←18세 ←19세), 쿠바	5
17세	동티모르, 북한, 수단(←21세), 인도네시아	4
18세	가나, 가이아나, 감비아, 과테말라, 그레나다, 그루지아, 그리스,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우이,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 니제르, 덴마크, 도미니카, 도미니카연방공화국, 독일,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러시아, 레소토(←21세),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마셜 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마케도니아, 말라위, 멕시코, 모나코(←21세),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몰도바, 몰타, 몽골, 미국, 미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바베이도스, 바하마, 방글라데시, 버뮤다, 베네수엘라, 베냉, 베트남, 벨기에, 벨로루시, 벨리즈,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21세), 볼리비아(←21세), 불가리아, 브라질(의무적),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솔로몬 군도, 수리남, 스리랑카, 스와질란드,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리온(←21세), 아르메니아, 아메리칸사모아,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21세),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앤티가바부다,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예멘, 온두라스(←21세),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이란(←17세 ←15세),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자메이카, 잔지바르, 잠비아, 중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체코, 칠레,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캐나다, 케냐, 코모르, 코스타리카, 콩고민주공화국,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키프로스(←21세),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팔레스타인, 포르투갈, 푸에르토리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홍콩	144
19세	한국	1
20세	기니(←18세), 나우루, 대만,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21세), 말리(←18세), 모로코, 부룬디, 부르키나파소(←18세), 세네갈(←18세 ←21세), 아르헨티나(←18세), 요르단, 일본, 짐바브웨(←18세), 카메룬, 캄보디아(←18세), 코트디부아르(←18세 ←21세), 콜롬비아(←18세), 토고, 튀니지(←21세), 페루(←18세), 폴란드(←18세), 필리핀(←18세)	24
21세	가봉(←18세 ←21세), 몰디브, 바레인, 사모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파키스탄(←18세 ←21세), 피지, 통가	9

두 번째 구체적 기준으로서 다른 나라의 선거권연령을 참고할 수 있다(<표 1> 참조). 우리나라

11) 200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http://blog.daum.net/ds4cli11/259>>, 검색일: 2010.10.21.; 김영지, “청소년참정권 관련 해외동향과 시사점”[선거연령 하향 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앞의 토론회)] 수정. 그런데 선거권연령을 낮춘 것으로 분류되었던 나라들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

라는 다른 어떤 나라 못지않게 국민의 전반적인 의식수준이 높고,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교환이 활발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이 크게 고양되었다. “이러한 정치환경의 변화는 적어도 중등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독자적인 판단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¹²⁾

이렇게 보면 최소한 18세의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라. 기타 정치참여 제한에 대한 검토

국민투표권연령은 선거권연령과 같게 하면 될 것인데, 문제는 피선거권연령 제한이다. 피선거권연령을 선거권보다 높임으로써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권리를 더 크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선거권연령에 대하여 헌법은 대통령의 경우 40세, 공직선거법은 다른 국가기관의 경우 25세로 정하고 있다. 피선거권연령을 선거권연령과 달리 정해야 할 근거는 없다. 대표 선택의 문제는 선거권자에게 맡겨두면 된다.

<표 2> 피선거권 부여 연령 (하위 기준) (총 36개국: 2004년 기준)¹³⁾

연령	국가명	국가수
18세	캐나다, 호주, 스페인, 헝가리,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9
21세	싱가포르, 러시아, 룩셈부르크, 영국, 브라질(하위), 이스라엘, 폴란드,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니카라과, 멕시코	11
23세	프랑스	1
25세	한국, 일본, 태국, 미국, 이탈리아(하위), 파키스탄, 네덜란드, 그리스, 콜롬비아(하위)	9
30세	미국(상위), 일본(참의원), 쿠웨이트	3
35세	브라질(상위), 프랑스(상위)	2
40세	이탈리아	1

선거권 중 교육감에 대한 선거권과 교육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권에 대하여는 달리 접근해야 한다. 다른 선거권이나 주민투표권보다 연령을 더 낮추어야 한다. 교육 정책으로부터 실제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도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인 청소년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다.

마지막으로 정당 가입의 경우에는 굳이 제한을 둘 까닭이 없다. 제한이 필요하다면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 기준, 즉 14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마. 선거권연령 하향화를 둘러싼 논의¹⁴⁾

영국은 1969년에 선거권연령이 18세로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선거권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움직임

12) 4인 의견: 현재 1997.6.26. 96헌마89.

13) 박혜린, “무엇이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는가,” 청소년의 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주최, <청소년정책공청회>), 영상미디어센터, 2002.05.21., 14 부분수정. 이 자료집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aria7179&logNo=7007263_9252>, 검색일: 2010.10.20.

14) 영국의 선거권연령 하향화 논의에 대한 소개와 쟁점은 김영지, 앞의 글에 따른 것임.

직임이 진행 중이다.¹⁵⁾ 선거권연령을 16세로 하향화하자는 주장의 첫 번째 논거는 사회 변화에 따른 비교이다. 18세의 투표연령은 1969년 국민대의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이 발효되어 21세에서 낮춘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영국 사회는 상당히 변화되었으며, 여러 척도를 비교해볼 때 1967년도의 평범한 18세 청소년의 경험, 태도 및 생활 기술이 2001년도엔 16세의 청소년에게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두 번째 논거는 2002년 9월 잉글랜드에서는 11세-16세의 교육과정에서 투표의 중요성, 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 여러 가지 선거 제도, 압력집단 및 주제별 정치 사안들에 대해 토론하고 가입하는 방법 등에 대한 시민의식교육이 의무화되었다. 16세에 달하는 청소년들은 영국의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다. 선거권연령 인하는 이러한 지식과 그에 대한 실천을 공백 없이 연결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 논거는 정보 시대의 도래이다. 인터넷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양의 정보 증가를 가져왔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그러하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전 세대보다 뉴스에 더 민감하며 자신들의 요구에 맞는 특정한 정보원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논거는 표현의 평등이다. 민주시민 자격의 확인은 선거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정치적 절차나 구조에서 느끼는 소외감(disconnection)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논거는 정치로부터의 단절이다. 청소년들이 투표나 선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투표율 감소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선거권연령을 낮춤으로써 선거에 대한 청소년들의 각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여섯 번째 논거는 다른 사회적 참여 연령과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영국은 대개 16세부터 취업과 결혼 등의 사회참여를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논거는 대의의 필요성이다. 대다수 청소년들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을 제대로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에 대하여 정치인들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정치적 고려대상에서 배제된다. 청소년의 의사가 정치적으로 전달되게 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선거권연령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첫 번째 논거는 투표율의 저하이다.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투표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투표권을 16, 17세로 확장하게 되면 전체 투표율은 더 감소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투표율은 별개의 문제이며 두 문제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인구집단을 갖게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두 번째 논거는 성숙도이다. 나이 많은 투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투표를 할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어린 청소년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혁 지지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각각 성숙하는 시기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갖고 선거에 입후

15) 진보적 성향의 재단 '조지프 라운트리 트러스트' 지원을 받아 구성된 권력위원회는 최근 '국민에게 권력을'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변화를 피하지 않으면 영국 정치체제는 서서히 붕괴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최근 급락하는 투표율과 정당가입률 등을 예로 들며 정치와 국민 사이의 간극을 메워나갈 방안들을 제시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참정권 연령을 16살로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 대한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0%가 16살은 너무 이른 나이라고 응답했다. 한겨레 2006.02.28.,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5606.html>>, 검색일: 2011.10.21.

보한 많은 후보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고 독립적일 수 있는 나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타블로이드판 신문은 11세 연령의 문자해독능력 수준을 목표로 하며,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12세가 되면 사고나 인지능력이 대부분 성인 수준과 유사하다고 말한다. 실제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여러 단체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가계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논거는 청소년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되면, 그들은 시험이나 과제 또는 교복 폐지와 같은 사소한 일들을 논쟁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중요한 사안이며, 그 문제가 일단락되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확장해갈 것이다.

네 번째 논거는 청소년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되면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성인의 경우에도 선거 후보자의 성의 첫 글자가 후보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있다. 성이 V, W, Y보다는 A, B, C로 시작하는 후보자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성인들의 경우 일정한 투표 습관은 문제가 있지만 이로 인해 그들이 투표권을 잃지는 않았다.

다섯 번째 논거는 성인들은 모두의 필요를 생각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청소년들은 세상을 너무 모르며 성인들이 16, 17세 청소년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되면 자신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권리를 무시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19세기와 20세기 초 여성과 노동계급에게도 선거권을 확장하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개인의 투표는 누가 자신들의 이익과 지역사회 이익을 가장 잘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자기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투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여섯 번째 논거는 청소년들은 정치에 관심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의 헌정사에서 볼 수 있듯이 독재 정권에 항거하는 항일독립운동에서부터 4·19혁명이나 5·18광주민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운동에서 청소년들은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곱 번째, 청소년들이 바라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부분 청소년들은 관심이 없고, 소수의 청소년만 관심이 있어 그들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또한 청소년들이 선거과정에서 소외당해온 결과일 수 있다.

여덟 번째, 청소년들은 대중 스타나 부모로부터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투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자신의 투표에 누가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부분 정치인이나 그들이 내놓는 정책이라고 답했다. 전북의 학생들은 인권교육이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압도적 비율로 정치인을 꼽기도 하였다.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자신의 정치이념을 강요하는 부모의 문제이므로 그 부담을 청소년에게 지울 수 없다. 또한 누구나 다양한 사람들과 대중매체로부터 영향을 주고 받는다.

바. 맺음말

젊은 세대는 투표율이 낮아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말해진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정치 참여가 배제된 풍토에서 정치 참여의 무력감을 체험했던 때문은 아니었을까. 민주 사회에서 정치 는 직업정치인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사회적 자원 또는 가치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개방되어야 한다.

그동안 보통선거의 원칙의 유일한 기준인 연령은 헌법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이 관이하게 다른 기준인 민법상의 성년 기준에 의해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과 헌법의 차이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미성숙론'에 따라 선거법의 이러한 기준에 대하여 합헌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은 이미 민주시민이다. 성인의 성인에 의한 성인을 위한 정치는 청소년들에게 폭력일 수밖에 없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는 청소년기에 민주정치에 대한 경험이 없어 민주주의에 미성숙한 어른을 줄일 수 있는 민주적 대안이다. 청소년 미성숙론은 학교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를 박탈하는 데까지 악용되고 있다. 오히려 학교야말로 청소년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최대한 실천함으로써 학습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학교는 체제순응적인 인간 개조를 위한 수용소가 아니다.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아직도 학교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이다. 마치 군대의 특수성처럼 학교 또는 교육의 특수성이 위계적 전근대적 문화를 유지하는 논리로 악용되고 있다.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차별하고 학교 공간을 폐쇄하여 학생을 강제 수용하여 강제적으로 학습노동을 강요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의 정치참여권 획득은 필수적이다. 청소년도 주권자로서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주최 : 표현의 자유 연대, 권영길 의원실
일시 : 10월 23일 일요일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관(신관) 4층 모의법정

표현의 자유 연대 -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제 1차
청소년 정치참여 보장을 위한 토론회
